

대구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1315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이경우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485,113원 및 그 중 13,215,906원에 대하여 2023. 2. 27.부터 2023. 8.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2. 1. 24. 접수 제10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1. 8.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44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20. 4. 2.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2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가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5. 4. 1.인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발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의 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21. 1. 1.부터 연 8%이다.

다. 피고 A가 2022. 10. 5.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3. 2. 27. D은행에 위 약정과 관련하여 13,215,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약정과 관련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A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269,207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

18. 피고 B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2. 1. 24. 접수 제102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8. 30. 피고 C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4458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3,485,113원(= 대위변제금 13,215,906원 + 대지금금 269,20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3,215,90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8. 26.까지는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전 D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2022. 10. 5. 발생하기 전인 2022. 1. 18. 피고 B와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30. 피고 C와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고 C에게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와 피고 C의 각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배우자인 F이 2014. 4. 8.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 A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되 다만 명의는 피고 B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나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이 대물변제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F이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2. 1. 24. 접수 제10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44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별지